

(2) 독일¹³⁾

독일은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제35c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특정 조치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독일 정부가 인정한 에너지 전문가(에너지 컨설턴트)로부터 지원사업 대상 조치임을 사전 확인받은 납세자에게 총 공사 비용의 20%를 3년에 걸쳐 주택당 최대 40,000유로를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3) 일본¹⁴⁾

일본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과 관련된 세액공제 규정으로는 「租税特別措置法(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4에 에너지 절약형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특별 감가상각을 규정하고 있다. IBS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금 3,000만엔 이하의 중소기업·개인은 10% 세액공제 적용 가능, 그 외는 7% 등으로 차등 적용 되며 도입 설비에 대해서도 30%~40% 상당액을 도입 첫 해에 특별상각(즉시상각) 할 수 있는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효율 및 AI 스마트 건축 요소의 도입을 ‘과세 감면’이라는 정책 도구로 유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IBS 설비를 ‘고급 설비’로 분류하여 오히려 가산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정반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외는 국가 인증제도와 조세제도의 연계가 명확하며, 인증등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합리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IBS 기술을 국가 건축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반드시 벤치마킹할 요소이다.

다. 감면 방안 제안

「지방세특별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IBS 건축물(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

13) 세계법제정보센터,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35c조 참고
<https://clean-energy-islands.ec.europa.eu/countries/germany/legal/energy-efficiency-policies-ee/energy-efficiency-measure-tax-subsidy>

14)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租税特別措置法(조세특별조치법) 第四十二条の四 참고